

2021년 제54차 UNCITRAL 본회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 승 은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 세 영

I. 회의 개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4차 본회의(Commission)는 2021. 6. 27. ~ 7. 15. 동안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54차 회의에서는 2019년 제53차 본회의 이후 진행된 각 실무작업반 논의 경과 보고 및 결과물(입법지침 등) 채택, 실무작업반의 미래 의제 선정 및 기타 국제상거래법 이슈(코로나-19, 기후변화 등)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 및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II. 채택 문서

1. UNCITRAL Limited Liability Enterprise 입법지침 채택(제1 실무작업반)

가. 논의 경과 및 결과 요지

UNCITRAL Limited Liability Enterprise UNCITRAL 유한책임회사, 이하 ‘LLE’라 함)을 위한 입법지침(이하 ‘입법지침’이라 함) 제정 논의는 소규모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 제1실무작업반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총 35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이번 본회의 직전, 지난 제35차 작업반 회의에서 정리되지 못한 잔여 쟁점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전체위원회(Committee of Whole) 설치가 결정되었고, 해당 전체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문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입법지침은 아직 소규모 기업에 유한책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낫선 국가들에게는 입법 과정에 큰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LLE와 유사한 유한책임회사가 이미 존재하며 입법지침의 내용 역시 국내 법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실무에 있어 유의미한 참

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실무작업반의 다음 작업으로는 신규 주제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Access to credit for MSMEs)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회가 사무국에 LLE를 위한 표준 정관(Model Organization Rule) 작성을 지시함에 따라 표준 정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쟁점

전체위원회는 그간 실무작업반에서 합의된 대로 권고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권고안에 대한 해설의 표현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임시로 사용되던 ‘UNCITRAL Limited Liability Organization (UNLLO)’ 대신 LLE(Limited Liability Enterprise)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LLE의 경영사항 일체에 대해 만장일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77문단은 만장일치 의결 필요 사항의 범위를 ‘LLE 경영에 필수적인 사항(essential aspects of the operation of an LLE)’으로 수정함으로써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사원들 상호간에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도록 정관(organization rule)

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제99문단에서, “사원이 유한책임을 포기할 수 있다(or whether they should forego limited liability protection)”는 부분은 유한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LLE 제도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다.

제130문단은 퇴출된 사원의 권리에 대해 반드시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실시할 뿐 별도의 추가 설명이 없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LLE가 퇴출된 사원에 대하여 상계권을 갖는 등의 경우에는 퇴출된 사원의 권리에 대하여 완전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2. UNCITRAL 조정규칙 등 조정 관련 규범 채택(제2실무작업반)

가. 논의 경과 및 결과 요지

UNCITRAL이 2015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정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조정 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국제상사조정 및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하 ‘국제상사조정 모델법’이라 함)이 채택되는 등 조정에 관한 국제거래규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2실무작업반은 그 후속 작업으로 i) 위 1980년 제정 UNCITRAL 조정규칙(UNCITRAL Mediation Rules, 개정 전 명칭은 UNCITRAL Conciliation Rule)을 그간의 조정제도 변화에 맞춰 개정하고, ii) 조정 에 관한 주석(UNCITRAL Notes on Mediation)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iii) 각국의 국제상사조정 모델법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상사조정 모델 법의 입법 및 사용에 관한 지침(A Guide to Enactment and Use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작성 작업도 진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UNCITRAL 조정규칙은 1980년도 제정된 UNCITRAL Conciliation Rule에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 조정과 관련된 새로운 동향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정에 관한 위 3건의 문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조정규칙, 주석, 입법지침 등은 각국 정부가 조정 법제를 마련하고, 각국 조정기관이 사용하는 조정 규칙을 개선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요 내용

(1) UNCITRAL 조정규칙 채택

UNCITRAL 조정규칙 개정안(이하 ‘규칙안’이라 함) 제3조 제5항이 조정인 선정 시 ‘성별의 다양성(gender diversity)’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조정인의 성별(gender of the candidates)’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규칙안 제9조(a)는 당사자가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날짜에 조정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화해합의의 발효 시점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합의로 화해합의에서 정한 일자(or such other date as agreed by the parties in the settlement agreement)”라는 옵션을 추가하였다.

규칙안 제12조에서 조정인이 당사자의 동의를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중재인, 한 쪽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중재인과 달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되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모델 조정 조항(model mediation clause)이 “조정지(place of medi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재의 경우와 달리 심

가포르조정협약 등 조정 관련 규범에서는 조정지라는 법적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 장소(location on mediation)”로 수정하였다.

한편, 중재규칙에 중재인의 독립성 진술에 관한 표준 문언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규칙에도 조정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진술 문언을 부록(annex)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 UNCITRAL 조정에 관한 주석 채택

조정인 보수 지급에 관하여 “조정인 보수는 조정의 결과나 분쟁 금액에 따라 산정되거나 별도로 산정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조정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여야 한다(The fee of the mediator may or may not be dependent on the outcome of the mediation or the amount in dispute. Furthermore, the parties should agree from the outset that the mediator will be paid regardless of the outcome)”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기존 문안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의 조정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3) 국제상사조정 모델법의 입법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채택

제164문단 중 “권한 당국이 조정 결과의 승인·집행을 거절하면서 공공정책을 근거로 삼는 경우, 유연성이라는 조정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일부 견해일 뿐이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3. UNCITRAL 신속중재규칙 채택 (제2실무작업반)

가. 논의 경과 및 결과 요지

UNCITRAL 신속중재에 관한 규칙(이하 ‘신속중재규칙’이라 함)에 대한 논의는 저비용의 신속한 중재제도 도입을 목표로 2019년 상반기 제2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로 총 5차례 회의가 있었고 2021년 상반기에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잔여 쟁점인 신속중재규칙 초안(이하 ‘규칙안’이라 함) 제16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외 나머지 조문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신속중재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신속중재규칙에 관한 주해(Explanatory Note, 이하 ‘주해’라 함)를 원칙적으로 승인하되 마무리 작업은 제2실무작업반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속중재규칙을 즉시 발간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중 주해가 완성되는 때에 주해와 함께 공식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주요 내용

안 제16조는 중재판정이 내려져야 할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신속한 판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정 시한을 초과하는 연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연장 불가능한 시한을 둘 경우 중재판정부가 판정 문안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 경미한 수준의 도과조차도 절차적인 하자로 보아 중재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논의 결과, 중재판정부에 의한 무분별한 절차 연장을 막기 위해서 판정 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판정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safety valve)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 시한을 중재판정부 구성 후 6개월로 결정하였고, 예외적인 상황

(unexceptional circumstance)에서는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안에 합의하였다(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1회 연장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연장 횟수나 기간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판정 시한인 9개월을 초과한 연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 판정을 시한 내 선고하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ii) 중재판정부가 연장 기간 및 이유를 제시하고, iii) 당사자 쌍방의 동의하에 가능하도록 하였다(안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연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경우 연장을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안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에 신속중재절차를 중단하고 일반중재절차로 회부해 달라는 신청을 함으로써 연장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논의 결과, 판정 시한 연장을 위해 안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 제16조 제4항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연장에 대한 합의 유무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은 당사자 쌍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장 제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택 가능하다(The extension shall be adopted only if all parties express their agreement to the proposal within the fixed period of time)”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신속중재규칙을 채택한 후에는 주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 △적법절차의 중요성 강조, △규칙 전반에 등장하는 “Consultation(협의)”의 의미 명확화, △본안 전 항변 및 선결적 결정(Early dismissal and preliminary 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 삭제 등의 의견에 대해 상당수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하였다. 제2실무작업반은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2021년 하반기에 주해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소규모기업의 도산절차(간이도산절차)에 관한 입법지침(제5실무작업반)

가. 논의 경과 및 결과 요지

이번 본회의에는 지난 제58차 제5실무작업반 회의까지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규모 기업의 도산법에 관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초안(이하 ‘지침 초안’이라 함)이 제출되었다. 그 중 권고(Recommendation) 부분의 채택과 주석(Commentary) 부분에 대한 원칙적 승인이 작업반으로부터 요청되었다.

나. 주요 내용

(1) 지침 채택 방식

지침 초안의 채택 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들은 이번 입법지침과 같은 문서가 그 전체 또는 일부의 채택을 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의견수렴을 위해 국가 및 유관기구에 제출되는 경우 사무국이 통합 문서를 마련하여 회부 또는 회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번 본회의에 제출된 주석 관련 문서가 주석 문안 전체를 다루지 않고, 성안이 완료된 권고 부분과 연동하여 수정된 사항들만 발췌하여 비롯된 문제였다. 즉, 통합 문서를 마련하여 작업반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성안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직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 지침 초안이 채택 및 원칙적 승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규모기업들의 재정적 위기가 임박하였음을 고려할 때 신속히 성안이 완료되어 각국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2) 지침 배포 형태

사무국은 우선 이번 입법지침을 기존의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UNCITRAL 중소기업(MSMEs)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기존 입법지침의 일부로 편입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상의 불편 등은 용어사전, 색인목록 등을 통해 해소하고, 본문 구성 방법을 현재의 초안과 달리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번 지침이 소규모기업(MSEs)의 개념 정의를 직접 내리지 않고 각 국내법에 맡겨 두었음을 감안하여 다른 UNCITRAL 중소기업 시리즈 규범과의 적절한 연결점을 만들 것이 제안되었다. 특히 이번 지침 초안은 중규모기업(*medium-sized enterprises*)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중규모 기업도 함께 다루고 있는) 다른 UNCITRAL 중소기업 시리즈와의 관계에서 적용 범위의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지침의 권고(Recommendation) 부분에 대한 논의 내용

권고 부분은 본회의에 제출된 문안이 그

대로 채택되었다. 다만 “절차 개시 전의 구제 금융”에 대한 권고안 제107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요건 구비를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논의 결과 권고 본문이 아닌 주석에 관련 내용을 두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소규모기업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기 위한 채권자의 수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별다른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다.

(4) 지침의 주석 부분에 대한 논의 내용

‘의제승인’에 관한 주석(279번 문단)과 관련하여, “World Bank Principl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Debtor Regimes (2021)”(이하 ‘세계은행 도산 원칙’)에 소규모기업의 도산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음이 이번 입법지침과의 연관성과 함께 소개되었다. 세계은행은 각 국가가 채권자의 표결 요건을 유지함에 있어 개정된 세계은행 도산 원칙¹⁾에 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수정 문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UNCITRAL 문서와 세계은행 도산 원칙 간의 불일치가 UNCITRAL 문서를 통일된 ICR 기준(ICR Standard)²⁾의 일부로 소개하고 활용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1) 개정된 세계은행 도산 원칙은 각 국내법이 회생계획을 적절히 통지받은 채권자의 ‘침묵’ 또는 ‘반대 표시의 부존재’를 그 회생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도산절차 상의 표결 요건을 간이화하도록 하였다.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의 내용은 각주로 추가하고 279번 문단은 원래 문안대로 원칙적 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 기타 사항

이번 입법지침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회의 과정 전반에서 강조되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 문안 및 채택 방식의 변경 등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으나, 대다수 국가들은 실무작업반에서 도출된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지침 초안의 내용이 팬데믹과 관련하여 갖는 시의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재 문안을 유지하고 ‘권고의 채택 및 주식의 원칙적 승인’을 지지하였다.

의장은 각국 의견이 반영된 지침 초안 및 결과보고서, 본회의 결정문 초안을 회람하였고, 묵시적 동의 절차(silence procedure)를 통해 동 문서들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된 권고 부분 외에, 주식 부분의 잔여 쟁점은 2021. 12. 열릴 제59차 작업반 회의에서 검

토를 완료하고 이를 2022년 제55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채택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III. 미래 의제 : 향후 작업반 논의 계획

1. 도산절차의 준거법 및 민사적 재산 추적·회복(civil asset tracing and recovery and applicable law in insolvency proceeding)

사무국은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³⁾의 차기 실무작업반 주제 채택 여부는 “도산절차에 대한 준거법”에 관한 콜로키움 결과 논의 시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상기하면서, 2020. 12. 11. 비엔나에서 개최된 “도산절차에 대한 준거법”에 관한 콜로키움 결과를 보고하였다.

“도산절차에 대한 준거법”에 대하여, 이 주제가 국내법과의 관계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관련 논의를 선행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 주제는 EU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

2) ICR Standard (Insolvency and Creditor Rights Standard): 세계은행과 UNCITRAL이 국내 도산 및 채권자 권리 보호 시스템을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실무 체계에 관하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세계은행의 도산 관련 원칙(World Bank Principl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Debtor Regimes)과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으로 구성된다.

3) 2019. 12. 6. 비엔나에서 개최된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한 콜로키움 결과는 제53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지난 두 차례 콜로키움 모두 성공적이었으므로 “도산절차에 대한 준거법”과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한 논의를 동시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두 주제에 대한 병렬적인 논의 진행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해 논의할 경우 그 범위를 국제도산절차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이러한 범위 제한에 관한 언급이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논의의 범위를 미리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작업 결과에 따라 다른 분야에도 유용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점과 논의 시작 전에 미리 작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대신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주제의 작업 결과물에 관하여 ‘모델법’ 형태를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국가들은 ‘입법지침’과 같은 연성규범 형태로도 결과물 도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작업 결과물의 형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논의 결과, 제5실무작업반의 장래 작업

과제로 “민사적 재산 추적 및 회복”과 “도산절차에 대한 준거법” 모두가 선정되었으며, 제5실무작업반이 현재 논의 중인 소규모기업의 도산절차에 관한 입법 지침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두 주제가 제5실무작업반 내에서 작업 진행 방식 및 순서 측면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2.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s)

사무국은 우선 2020년 제53차 본회의에서 창고증권과 관련하여 모델법으로 규율 가능한 내용의 범위 및 UNIDROIT와의 공동 작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후의 진행 경과로서 온라인 영상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UNIDROIT와의 두 차례 실무작업반(UNIDROIT와 UNCITRAL의 공동 작업반)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UNIDROIT가 마련한 창고증권 모델법 초안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세 번째 회의는 2021. 9. 1. ~ 3. 예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창고증권에 관한 통일적인 규범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법 이론 간 차이점과 다양한 사법시스템에서의 실무 관행을 존중하는 중립적이

고도 기능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에 의장은 실무작업반에서 이와 같은 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무작업반은 UNIDROIT 집행이사회에 모델법 초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2회 이상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3. 양도성 복합운송증권(negotiabl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중국은 △철도와 결합된 국제적 복합운송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복합운송 시 책임 관계 및 그 증권의 디지털화(비실물화)에 관한 국내법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동 주제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무국은 2021. 2. 2. ~ 3.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그룹 미팅과 2021. 4. 13. ~ 14. 개최된 “양도성 복합운송증권의 비실물화(dematerialization)에 대한 국제적 경험”에 관한 웨비나 등 사전 작업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무국은 국제 교역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양도성 운송증권에 대한 국가 간 법적 승인이 중요하다

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작업반 과제로 지정하기에 앞서 우선 현존하는 국제 물품 운송에 관한 협약과의 조화를 검토하고 동 주제에 대한 사전 논의 작업을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운송증권의 도입은 무역 거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주제 선정을 지지하는 회원국도 있었으나, 증권의 책임 체계 등에 관한 국내법과의 부조화 가능성 및 관련 논의가 아직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장 실무작업반 과제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사무국의견에 동의하는 회원국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논의 결과, 다음 제55차 본회의에서 양도성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신규 문서의 예비 초안 및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이 사무국에 요청되었다. 또한 실무작업반 신규과제 지정 시 동 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4. 디지털 경제[legal issues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including dispute resolution)]

가. 논의 현황

사무국은 그동안 새로이 출현하는 기술 및 그 활용에 관한 법적 개념 정의·법적

분류 체계(legal taxonomy) 개발을 위한 노력과 기존 UNCITRAL 논의 체계로의 편입·수용 준비 과정을 보고해왔다. 특히, 향후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을 포함한 시스템 체계, 디지털 경제 환경(digital economy), 디지털 거래(digital transaction)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연구하는 데에도 동일한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작업을 통해 UNCITRAL이 UN 내에서의 관련 논의 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회의는 사무국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법적 개념 정의 및 분류 체계(legal taxonomy)에 대해 작업을 지속할 것을 승인하였다.

나.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분쟁해결 절차(dispute resolution in the digital economy)

본회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사무국 활동 보고서 및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과 관련하여서는 홍콩 법무부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현황 점검과 관

련하여, 사무국의 관련 정보 축적, 분석 및 공유 역할에 대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하며 관련 쟁점들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디지털 증거의 보존 및 그에 대한 접근성, 원격 청문절차의 타당성, 전통적인 법원 재판과 중재 절차 간의 관계 등이 관련 현황 점검(stocktaking)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분쟁해결절차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분쟁해결절차의 기본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due process), 공평·공정성(fairness)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언급되었다.

일본은 위 현황 점검의 수행을 위해 기존의 분담비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사무국에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일본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in the Digital Economy, DRDE)’이 2022년 제2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길 희망하였다. 미국, 체코,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다수의 회원국이 일본의 제안대로 DRDE에 대한 사전 현상 점검과 2022년 제2작업반에서의 논의 작업을 지지하였다.

본회의 의장은 위와 같은 일본의 재정

지원 제안에 사의를 표명하고, 제2실무작업반에서 DRDE에 대한 콜로키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콜로키움에서 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의 모델 규정, ② 분쟁해결절차 메커니즘이 내재된 온라인 플랫폼 및 분쟁해결에 중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 ③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기술 활용에 따른 영향 및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 ④ 이와 같은 모든 관련 변화 속에서 국제분쟁해결절차의 핵심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미래 의제 논의 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청되었다.

다. 인공지능의 이용 및 자동적 계약 체결(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 contracting)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제4실무작업반이 인공지능(AI),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자동적 계약 체결(automation in contracting)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음을 밝혔다. 이 의견은 제4실무작업반이 전자상거래 관련 분과로서 현재 “신원인증 및 신뢰제공서비스(Id Management and Trust service)”를 다루고 있고 “디지털 거래”에 대해 사전 준비적 성격의 논의를 수행하는

등 전자적 거래와 관련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다만 인공지능·자동적 계약 체결 및 데이터 거래에 관한 쟁점 및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할 필요성 또한 언급되었다. 즉, 실무작업반에서 과제를 수행할 만큼 해당 과제에 대한 법적 개념과 분류 체계(legal taxonomy)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작업반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콜로키움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심층 논의 과정에는 회원국 대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부문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상당수 회원국들 역시 제4실무작업반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콜로키움 또는 기타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콜로키움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4실무작업반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만, 현재의 실무작업반 구성원들이 인공지능·자동적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들로 새롭게 콜로키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명되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작업이 과도한 개념론적 논의로 변질되어 비건설적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논의 결과, 제4실무작업반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며 사전 논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던 부분들은 콜로키움이 아닌 실무작업반에서 직접 다루기로 결정되었다.

5. 코로나-19 관련 논의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국가별 사례 공유 목적의 온라인 웨비나가 성공적으로 개최(6.18)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추가 후속 작업(사례 공유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관련 국가별 실무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UNCITRAL 온라인 플랫폼 설립에 찬성하였으며, 플랫폼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이용자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IV. 평가 및 전망

이번 제54차 본회의에서는 「유한책임회사를 위한 입법지침」 「국제상사조정

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소규모기업 도산절차에 관한 입법지침(권고)」 등 다수의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물이 완성·채택되었고 「UNCITRAL 조정규칙」이 30년 만에 개정되는 등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조정 및 신속중재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법적 문서들이 다수 채택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조정협약과 관련하여 UNCITRAL 조정규칙이 개정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작업도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근시일 내 많은 국가 및 유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는 UNCITRAL에서의 국제규범 논의 동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도산절차 및 온라인 분쟁해결 등은 과거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였는데, 코로나-19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또한 공고히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현행법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관련 신규 문서들이 국내 현행법 및 실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의미한 규범의 등장에 관해서는 국내 입법 및 제도화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작업반의 차기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주제들이 거론되었다. 해당 주제들 모두 수차례의 콜로키움 및 부대행사 등을 통해 사전 논의 작업이 이미 수행된 바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이다. 특히 양

도성 복합운송증권의 경우 인접 국가인 중국이 큰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사항이고 향후 국제 교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논의 동향을 기민하게 살피고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